

대전지방법원 2023. 11. 15 선고 2023가단742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11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답 1,006㎡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3. 3. 29. 접수 제4298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백효민

별지